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19

발의연월일: 2025. 1. 22.

발 의 자:주호영・김예지・한기호

신성범 · 최은석 · 김기웅

고동진 · 성일종 · 김성원

이달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'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'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, 관할경찰관서장에 대한 신고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조건부 야간 옥외집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'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'라는 광범위한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은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,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음(2010헌가2, 2011헌가29 등).

또한,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 여부가 관할경찰관서장의 전면적 재량 권에 따라 좌우되도록 규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 려가 제기되고 있음. 이에 따라,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시간을 타법 규정상의 '야 간' 개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'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' 로 명확하게 규정하고,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고,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0조). 법률 제 호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본문 중 "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"를 "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"로 하며, 같은 조 단서 중 "부득이하여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"로 하고, "해가 뜨기 전이나해가 진 후"를 "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	제10조(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
시간) 누구든지 <u>해가 뜨기 전</u>	시간) <u>오후 11시부터</u>
<u>이나 해가 진 후</u> 에는 옥외집회	다음날 오전 6시까지
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	
다. 다만, 집회의 성격상 <u>부득</u>	<u>대통</u>
<u>이하여</u>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	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
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	<u>정으로 인하여</u>
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	
위한 조건을 붙여 <u>해가 뜨기</u>	
<u>전이나 해가 진 후</u> 에도 옥외집	
회를 허용할 수 있다.	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